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다급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다급(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1. 최종합격자 명단

선발예정 직위	최종 합격자		
	인원(명)	응시번호	성명
조사담당(조사과)	1	101	고 ○ 호

2.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가. 등록대상 : 최종합격자

나. 등록기간 : 2020. 2. 7.(금) ~ 2020. 2. 13.(목)

※ 등록기간 마감일 18:00까지 [직접 등록 장소에 방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등록장소 : 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A동 13층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운영지원과

라. 제출서류

- ①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 1>
- ② 채용 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1부 <서식 2>
 - 지정병원은 없으나, 제출 양식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③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부
- ④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부
 - 본인명의로 기본증명서(상세)로 발급받고,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⑤ 주민등록초본 1통(군 경력이 기재된 것)
- ⑥ 주민등록등본 1통
- ⑦ 신원진술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3cm×4cm) 1매

마. 제출방법

- 최종합격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소지하고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가. 등록기간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공무원임용령」제11조제2항)하며, 채용후보자 등록을 포기할 경우 임용포기서(서식3)를 작성하여 등록기간 내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나.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제출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등 증명서류는 최근 3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 이어야 합니다.

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 등을 완료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임용 예정입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채용후보자의 임용에 관한 문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운영지원과 (☎02-6124-755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서 식 1 >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2.22.>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진] 사진파일 가능 (3cm×4cm) · (3.5cm×4.5cm)	
등록기준지							
주 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국 적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복수국적 국가명:	<input type="checkbox"/> 외국국적 국가명:	배우자 및 자녀 국적			
특 기	취 미				자격증		
재 산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미혼 자녀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정당·사회 단체 활동	<input type="checkbox"/> 있음	단 체 명		기 간		직 책	
	<input type="checkbox"/> 없음			. . ~ . .			
병 역	본 인	군 별	병 과	최종 계급	기 간		미필 사유
	자 (성명)				. . ~ . .		
	자 (성명)				. . ~ .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공 학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 (자녀는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본인			자필서명	자필 서명
배우자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본인(예시)	가족(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안부·인사처) ■ 주민·범죄경력·수사·수배 조회자료(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행안부)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 서식 2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 24.>

(앞쪽)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사 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⑥ 검사 시					
⑦ 재 사용				⑧ 주민등록번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우: ()		
종 양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 골격계 질 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 부 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합 격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 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	----------

210mm × 297mm [백상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임신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신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사지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